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4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부가가치세 면제	3
가. 개요	3
나.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결의원안) ..	8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속형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로 분류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은 이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이를 이용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종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운임과 운행형태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비슷한 수준인 새마을호(일반철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속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가가치세 면세

가. 개요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²⁾는 서민생활의 지원 및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라. (생략)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면서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 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나. (생략)
-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나. (생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나. (생략)
-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외국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³⁾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⁴⁾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

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연원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4)」, 임상엽·정정운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12$ 매출세액 $120 \times 10\% = 12$ 매입세액 $\frac{(10)}{2}$ $\downarrow$ 납부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0$ 매출세액 $120 \times 0\% = 0$ 매입세액 $\frac{(10)}{(10)}$ $\downarrow$ 환급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3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downarrow$ 환급 ×

※ $120+10=130$,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0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자료: 「세법 워크북(2024)」, 이철재·정우승·유은중

나.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결의원안)

현행	개정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제1항제7호) ○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면세, 다만, 다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항공기, <u>고속버스</u>,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나목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 - <u>시외우등고속버스</u> 및 <u>시외고급고속버스</u>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식도,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세	□ 과세대상 여객운송 용역 중 고속버스를 시외고급고속버스로 변경 ○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면세, 다만, 다음 여객운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항공기, <u>시외고급고속버스</u>,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현행과 같음)

* 안도결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1)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을 시외고급고속버스(일명 ‘프리미엄고속버스’)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⁵⁾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

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시내버스, 지하철 등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임.

예외적으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해당 운송수단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서 주로 여가, 출장 등의 목적에 이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 중 고속버스는 ‘운행 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형승합자동차’⁶⁾를 의미하는데,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⑦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속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이하 생략)

※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고속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외고속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⁷⁾.

□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자가용 자동차의 보유비율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운행이 자유로운 자가용 자동차⁸⁾과 이동시간이 짧은 고속철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반면, 우등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임.⁹⁾ 현재 일반고속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속버스의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새마을호 열차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새마을호는 42,600원, 우등고속버스는 39,700원으로 우등고속버스가 새마을호보다 오히려 요금이 7% 가량 저렴한 상황임¹⁰⁾.

7)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시행령 개정(2020. 10. 7.)으로 일몰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영구 면세항목이 되었음.

8)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12월 말 339만 4,803대에서 2024년 9월 말 2,620만 2,541대로 크게 증가하였음.(출처: 자동차등록현황보고)

9) 참고로, 현재 우등이 아닌 일반고속버스에 대하여는 지역간 이동시 이용해야하는 최소한의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점, 시외직행버스나 새마을호 등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고 있음.

10) 서울-부산 구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KTX는 2시간 40분, 새마을호는 4시간 40분, 고속버스는 4시간 20분 내외임.

[주요구간 철도 및 고속버스의 운임 비교]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서울→대전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광주
고속버스	일반	면제	11,400	26,700	20,300	22,500
	우등	과세	16,600	39,700	30,000	33,000
	고급	과세	21,500	51,600	39,000	43,200
철도	일반(무궁화호)	면제	10,800	28,600	21,100	22,300
	일반(새마을호)	면제	16,000	42,600	31,400	33,100
	고속(KTX)	과세	23,700	59,800	43,500	46,800

주) 2024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고속버스통합예매사이트(kobus.co.kr) 및 코레일예약사이트(letskorail.com) 검색

둘째, 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운임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가를 통해 고속버스 여객운송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고속버스 수송인원은 2019년 4,300만명에서 2023년 3,000만명으로 30.2% 감소하였고, 매출액 또한 2019년 7,062억원에서 2023년 5,569억원으로 21.1% 감소하여 고속버스 여객운송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고속버스 수송인원 현황]

(단위: 백만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송인원	43	23	22	28	30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연도별 고속버스 매출액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7,062	3,918	3,655	4,769	5,569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셋째,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체 고속버스 1,496대 중 우등고속버스가 63.3%(947대)를 차지하고 있어 운송분담 측면에서 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속버스 유형별 현황]

(단위: 대)

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	고급고속버스	합계
235	947	314	1,496

주: 2024년 8월말, 회원사 기준
자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우등고속버스 요금이 인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민 부담의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를 달성 여부가 불확실함.

특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사업자는 우등고속버스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이를 버스요금에 전가할 수 있음.

또한, 2015년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일반고속버스의 운임이 인하되지 않은 바 있음¹¹⁾.

둘째, 우등고속버스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객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고급 운송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우등고속버스의 운임은 일반 고속버스보다 50% 정도 비싸고 좌석 수도 29인승으로 일반 고속버스 승차인원(45명)의 2/3에 불과하기 때문임.

셋째, 우등고속버스를 면세할 경우 유사 운송용역(고속철도, 택시 등)에서도 면세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OECD 국가의 경우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해 면세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11) 부가세 면제 고속버스 “요금 그대로”... 소비자만 봉인가(동아일보, 2015. 6.30)

(전략)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는 올해 4월부터 면제됐지만 아직까지 요금은 그대로다. 버스 업체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